

키르기스스탄(Kyrgyzstan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22년
- 현행법 : 1997년(국가연금), 2004년(보험료율), 2008년(개인계좌), 2017년(국가급여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(NDC), 의무개인계좌, 사회부조제도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 : 근로자, 자영자, 개인 기업가, 협동조합, 국영 및 집단 농장 회원
 - 특별제도 : 군인
 - 특별규정 : 항공업 및 행위예술관련 근로자, 국가를 위한 공을 인정받은 일부 특혜 국민
- 사회부조 :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국민 및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수입의 8%(사회보험 및 명목확정기여) + 월수입의 2%(의무개인계좌); 정상퇴직 연령 대비 15살 이하까지 월수입의 10%(사회보험 및 명목확정기여)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업재해,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자영자 : 대부분 자영자의 월 평균수입의 10%; 가입자의 분야에 근거하여 특정 상인들의 월 평균수입의 3~6%
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의료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총액의 15.25%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, 출산, 산재급여의 재원으로 사용됨
- 정부 : 사회보장급여의 총비용과 장애인 상시간호보조금 부담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, 의무개인계좌) : 남자는 63세이며 보험적용 고용기간이 25년 이상인 자, 여자는 58세이며 보험적용 고용기간이 20년 이상인 자
 - 보험적용 고용기간에는 재학기간, 출산휴가기간, 장애인 보호기간, 등록된 실업기간, 기타 특별령에 의해 승인받은 휴가기간 등 포함
 - 전일제 지하 작업자, 전일제 유해환경 근로자, 체르노빌 사고관련 작업자, 5명 이상의 자녀나 한명 이상의 장애아를 양육하는 모친, 소인증 환자의 경우 수급요건 완화
 - 부분연금 : 노령연금 수급 연령조건은 충족하지만 가입기간이 남성의 경우 25년 미만, 여성의 경우 20년 미만인 자
 - 초기연금 : 남성은 최소 가입기간이 40년인 60세, 여성은 최소 가입기간이 35년인 55세
 - 노령보조연금 : 80세 이상인 자,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, 체르노빌 사고 관련 근로자, 그룹 I 장애인(상시간호요구), 그룹 II 장애인(완전장애인으로 거동능력을 80% 상실한 자) 돌보는 자; 미혼인 그룹 II 장애인에게 지급됨
 - 연금은 양자협정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는 지급가능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소득관련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의 남성 혹은 60세의 여성에게 지급. 소득조사 없음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) : 그룹 I(완전장애인으로 상시 간병을 요하는 자), 그룹 II(완전장애인으로 거동능력을 80% 상실한 자), 그룹 III(부분장애인으로 근로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)로 판단되어야 하며, 장애가 발생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최소 보험적용 고용기간을 충족해야 함; 23세 미만일 시 최소 1년; 23~25세일 시 최소 2년; 26~30세일 시 최소 3년; 31세 이상일 시 최소 5년
 - 보험적용 고용기간에는 재학기간, 출산휴가기간, 장애인 보호기간, 실업기간, 기타 특별령에 의해 승인받은 휴가기간 등 포함
 - 장애정도는 노동사회보장국 전문위원회가 평가
 - 상시간호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에 타인의 상시 간호를 요하는 경우 지급
 - 부분연금 : 완전장애연금을 수령하기에 보험적용 고용기간이 모자란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보조금 : 장애인 그룹 I, 장애인 그룹 II 중 미혼인 자, 체르노빌 사고 때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
 - 장애연금은 양자협정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는 지급가능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어린 시절부터 장애가 있었던 자, 18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자에게 지급됨; 또한 장애인 그룹 I(완전장애인으로 상시 간병을 요하는 자), 그룹 II(완전장애인으로 거동능력을 80% 상실한 자), 또는 그룹 III(부분장애인으로 근로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)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다른 연금도 지급받지 않는 자에게 지급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) : 가입자의 사망 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최소 보험적용 고용기간을 충족해야 함; 23세 미만일 시 최소 1년; 23~25세일 시 2년; 26~30세일 시 3년; 또는 31세 이상일 시 최소 5년

- 보험적용 고용기간에는 재학기간, 출산휴가기간, 장애아 보호기간, 실업기간, 기타 특별령에 의해 승인받은 휴가기간 등 포함
- 수급자격자 : 58세 이상의 배우자(장애가 있을 시 연령무관); 16세 미만의 자녀(학생의 경우 23세); 16세 미만의 형제, 자매, 손주를 포함한 비근로 피부양자; 보통 퇴직 연령 보다 나이가 많은 부모(장애가 있을 시 연령무관)
- 연금 수급자가 타국으로 영구 이민 시 유족연금 해외지급 불가
- 유족사회연금(사회부조) : 가족 부양자가 사망하고 그/그녀가 생전에 노령 혹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없었던 경우 16세 미만(학생의 경우 23세)의 자녀에게 지급됨. 소득조사 없음
- 장제비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) : 가입자 혹은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 지급
- 장례수당(사회부조) : 근로자, 실업자, 자영자, 혹은 사회부조 수혜자의 사망 시 지급됨. 또한 특정 피부양자들의 사망 시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, 의무개인계좌) : 월 급여액은 몇 가지 요소들의 합계액 (기본정액급여, 사회보험부분, 명목확정기여부분, 의무개인계좌)
 - 기본정액급여는 1,780soms와 직전연도 국가 월 평균임금의 12% 중 큰 금액
 - 월 평균임금은 15,670soms(2017 기준)
 - 사회보험요소는 가입자의 연속 60개월 동안의 월 평균수입에 1996년 이전 고용기간의 매년에 대해 1%씩 곱한 값
 - 사회보험요소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최대 월 평균수입은 기본연금액의 50배
 - 기본연금액은 월 100soms
 - 명목확정기여 요소는 <1996년부터 축적된 보험료(최소 1년 이상) ÷ 12개월 × 가입자가 속한 인구집단의 퇴직 시점 기준 기대수명 계수>로 계산
 - 개인계좌급여는 퇴직 시 계좌 잔고에 근거함
 - 부분연금 : 보험적용 고용기간의 연도 수에 따라 전체연금액의 특정 % 지급
 - 초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
 - 노령연금 보조금 : 기본연금액의 50~475% 매달 지급
 - 월 노령연금 최고액은 없음
 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임금과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월 1,000soms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) : 그룹 I 또는 그룹 II 장애로 판단되었다면, 월 연금액은 몇 가지 요소들의 합계액 : 기본정액급여, 사회보험부분, 명목확정기여부분. 그룹 III 장애로 판단되었다면, 전체 장애 연금의 50% 지급
 - 기본정액급여는 1,780soms와 직전연도 국가 월 평균임금의 12% 중 큰 금액
 - 국가 월 평균임금은 15,670soms(2017 기준)

- 사회보험요소는 가입자의 연속 60개월 동안의 월 평균수입을 1996년 이전 고용기간의 매년에 대한 1%로 곱한 값
- 사회보험요소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최대 월 평균수입은 기본연금액의 50배
- 기본연금액은 월 100soms
- 명목확정기여 요소는 <1996년부터 축적된 보험료(최소 1년간의) ÷ 12개월 × 가입자가 속한 인구집단의 퇴직 시점 기준 기대수명 계수>로 계산
- 상시간병수당 :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연금액의 200%, 다른 장애인에게는 특정급여액의 100%
- 부분연금 : 보험적용 고용기간의 연도 수에 근거하여 전체 연금액의 일정한 % 지급
- 장애연금수당 : 기본연금액의 50~475%가 매달 지급
- 월 장애연금 최고액은 없음
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임금과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장애인 그룹 I에게 월 2,000soms(18세 이전 장애 발생 시 4,000soms); 장애인 그룹 II에게 월 1,500soms(18세 이전 장애 발생 시 3,300soms); 장애인 그룹 III에게 월 1,000soms(18세 이전 장애 발생 시 2,700soms)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) : 1인의 피부양자에게 장애인 그룹 II연금의 50%, 2인의 피부양자에게 90%, 3명의 피부양자에게 120%, 피부양자 4인 이상에게 150% 지급
- 완전고아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) : 양 부모가 받고 있었거나 받게 되었을 모든 연금액만큼의 유족연금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임금과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
- 유족사회연금(사회부조) : 16세(정규학생의 경우 21세) 미만의 고아 1인당 월 1,000soms; 완전고아는 월 2,000soms 지급. 소득조사 없음
 - GM은 월 900 soms(2016년 10월 기준)
- 장례보조금(사회보험, 명목확정기여) : 기본정액급여의 1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(연금수혜자의 피부양자에게 기본정액급여의 3배 지급)
 - 기본정액급여는 1,780soms이거나 직전년도 국가 월 평균임금의 12% 중 큰 금액임
 - 국가 월 평균임금은 15,670soms(2017 기준)
- 장례수당(사회부조) : 직전년도 국가 월 평균임금의 100%; 자영자, 실업자, 사회부조의 수혜자 또는 근로자의 피부양자일 시 50%; 실업자 또는 자영자의 피부양자일 시 20% 지급

7 관리운영기관

- 키르기즈 공화국의 노동 및 사회개발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Kyrgyz Republic)
 - 일반적인 조율 및 감독
 - <http://mlsp.gov.kg>

- 키르기즈 공화국의 노동 및 사회개발부의 도청 및 지방청
 - 제도 관리

- 사회기금(Social Fund)
 - 보험료 징수 사회보험급여 지급
 - <http://socfond.kg>

<2018년 ISSA 자료>